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광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351

발의연월일: 2025. 1. 8.

발 의 자:이광희·채현일·박지원

양문석 · 김문수 · 이재강

민병덕・김 윤・송재봉

김우영 · 복기왕 · 윤종군

이병진 · 박상혁 의원

(14위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교육감 후보자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으로 유치원, 학교의 교원으로 근무한 교육경력과 국가 및 지방지차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거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등 교육행정 경력 3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고 있음.

하지만, 법률이나 조례의 제정과 개정 및 관련 업무의 감사 실적을 통한 전문성을 보유하는 등 다양한 경로로 교육·학예에 관한 경력을 쌓더라도 관련 경력을 인정받기 어려움.

이에 국회 상임위원회와 시·도의회의 교육·학예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전문성을 쌓은 경우에도 그 교육 의정 경력을 인정하여 교육감 후보자 자격을 인정함으로써 다양한 경로의 경력을 갖춘 인재가 교육감에 도전하여 교육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 도록 위함임(안 제24조제2항제3호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3호에 따른 경력을 포함하려는 사람은 해당 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.

3. 교육·학예에 관한 의정활동 경력: 「국회법」 제37조제1항제5호 에 따른 교육위원회 및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에 따라 교육·학예 등에 관한 사무를 소관으로 하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24조(교육감후보자의 자격) ① 제24조(교육감후보자의 자격) ① (생 략) (현행과 같음) ②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 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3년 이상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 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 이어야 한다. <단서 신설> -----. 다만, 제3호에 따른 경력을 포함하려는 사람은 해 당 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. 1. • 2. (생략) 1. • 2. (현행과 같음) 3. 교육 • 학예에 관한 의정활동 <신 설> 경력: 「국회법」 제37조제1 항제5호에 따른 교육위원회 및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에 따라 교육·학예 등에 관한 사무를 소관으로 하는 위원회 의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